어린이 생활안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는 관심이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가정에서부터 학교까지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이렇게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사고의 종류, 대처방법, 예방법까지 다양한 정보와 법령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알아두고 조심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알아볼까요?

어린이 생활안전 1
1. 교통안전 4
1.1. 어린이 보행안전 4
1.1.1.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4
1.1.2.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9
1.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12
1.2. 어린이 탑승안전 17
1.2.1. 가정의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 17
1.2.2.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 19
1.2.3.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24
1.3. 어린이 자전거 안전 27
1.3.1. 어린이 자전거 탑승 시 안전수칙 27
2. 가정안전 31
2.1.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31
2.1.1. 가정안전사고의 종류 31
2.1.2. 가정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방법 33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35
2.2.1. 어린이보호포장 35
2.2.2. 안전용기·포장 화장품 및 의약품 41
3. 학교안전 44
3.1. 학교안전사고 44
3.1.1.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 44
3.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48
3.2.1.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의 종류 및 기준 48
3.2.2. 보상금의 지급제한 55
3.2.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57
4. 놀이안전 63
4.1.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 63
4.1.1. 어린이 물놀이 안전 63
4.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65
4.2.1.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수칙 65
4.2.2.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68
4.3. 어린이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70
4.3.1. 어린이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 70
4.3.2.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75
5. 화재안전 81
5.1.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81
5.1.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81

1. 교통안전

1.1. 어린이 보행안전

1.1.1.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어린이 보행사고의 발생 원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어린이는 가장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 사고 위험성이 높아요~
- 어린이는 자신이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면 운전자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차가 멈춰줄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 어린이는 자신이 다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지요.
- 어린이는 보통 어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작은 차보다 큰 차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넓은 길은 위험하고 좁은 길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또한 차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판단하지 못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요.
- 어린이는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금방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안전한 쪽으로 잘 피하지 못해요.
-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시야가 좁을(어른의 2/3정도)뿐만 아니라 키가 작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교통안전 참조>

어린이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보행권의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이하 “보행권”이라 함)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이 유사한 지역 간에는 보행여건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보행정책의 수립·추진은 보행자의 안전과 목표지점에의 접근 편리성과 함께 삶의 공간으로서의 쾌적성 및 미관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 보행권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조성·정비·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 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함)는 다음과 같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의 구역을 포함하여 위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단서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에 대해 다음의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 √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 등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 어린이를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
-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 및 주변 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시킬 경우 보행환경 개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특별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다음과 같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차량 속도 저감시설
- 횡단보도, 교통섬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 보행자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과 주변 지역 보행자길 안내시설

- 보도(步道)용 방호(防護)울타리
- 조명시설
-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 영상정보처리기기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 점자블록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개선사업 시행

▪ 특별시장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 해당 구역의 전통 및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보행자길의 조성
-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행편의증진시설의 설치
- 차량 통행량과 속도의 저감(低減) 방안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물의 통합 설치 방안
-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 개선 방안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 변화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특별시장 등이 정하는 사항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

▪ 특별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공사 중 안전시설의 설치의무

▪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도로법」에 따른 도로 제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특별시장 등은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특별시장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보행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보행자전용길의 진입 금지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운전자는 지정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본문).

▹ 다만, 긴급자동차의 경우와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경우는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단서).

※ 보행자전용길을 긴급한 이유 없이 진입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재난 복구, 공사 시행, 건축물 출입,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동차 등을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제16조제6항).

보행자 통행 우선원칙

▪ 보행자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일시정지 의무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가목).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

▹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경우

※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보행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의 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금지 등의 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교통안전, 어린이 보행안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행사고예방을 위해 보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

보도로 통행하기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단서).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 포함)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

▪ 보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자동차 등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한정)

▹ 보행자우선도로

※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마(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의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31의2호).

우측보행하기

▪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4항).

횡단보도로 건너기

▪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곳으로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단서).

▪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으로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 횡단을 하면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5항).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어린이 여러분~~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이렇게 하세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교통안전 >

1.1.2.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된 일정 구간을 말하며,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학원 가운데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도 지정 가능)
-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 지정신청

▹ 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학원 등(이하 “초등학교 등”이라 함)의 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만 해당)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 조사

▹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주변도로의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주변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주변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 지정

▹ 시장 등은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출입문이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말함)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본문).

▹ 다만,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단서).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전단).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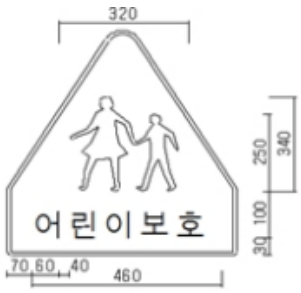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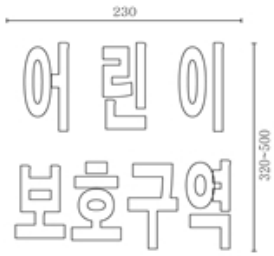
신호기 설치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안전표지의 설치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다음과 같은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제133호·제324호 및 제536호).

안전표지		
	 (어린이보호구역안)	

도로의 설치

▪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도로부속물의 설치

▪ 시장 등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도로부속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참조).

- 다음과 같은 보호구역 도로표지



※ 위와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제3호 참조).

- 도로반사경
-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방호울타리
-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횡단보도의 설치

▪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다음의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集散道路) 및 국지도로(局地道路) : 100미터
2.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1.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 200미터

1.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자동차의 통행제한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통행제한조치를 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

> **※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표지**
>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또는 자동차 등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시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안전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 II 1. 나. 320의3, 320의4).

구 분	안전표지	내 용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		어린이 통학버스만 주·정차 가능
어린이 승하차표지		어린이 통학버스와 자동차 등이 주·정차 가능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후 조치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함)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가 요청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방문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도로횡단 지도

▪ 시장 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가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벌칙

위반행위 및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7).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0조제3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4만원 13만원 9만원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제160조제3항			
60km/h 초과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7만원 16만원 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4만원 13만원 9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1만원 10만원 7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7만원 7만원 5만원
정차 및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 등 ※ 괄호안의 과태료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160조제3항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13만원(14만원) 12만원(13만원)
		노인·장애인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9만원(10만원) 8만원(9만원)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정차 및 주차 위반을 한 경우 괄호안의 과태료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적용됩니다.				

위반행위 및 범칙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10).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도로교통법」 제5조 제27조제1항 제27조제2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13만원 12만원 8만원 6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 40km/h 초과 60km/h 이하 20km/h 초과 40km/h 이하 20km/h 이하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6만원 15만원 10만원 13만원 12만원 8만원 10만원 9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4만원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4항 제27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7조제5항 제27조제6항제1호제2호·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정차·주차금지위반 주차금지위반 정차·주차방법위반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13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노인·장애인보호 구역에서 위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자전거 등	9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손수레 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60km/h 초과로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해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입니다.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온 정도로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즉,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②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형사재판에 관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이나 ☎ 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교통·운전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어린이 탑승안전

1.2.1. 가정의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의 주의사항

잠시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 운전자가 자동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장난으로라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6호).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자녀의 위험한 행동 제지

▪ 운전자는 함께 타고 있는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고, 아이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7호).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영유아보호용 장구 및 좌석안전띠의 착용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데, 옆 좌석의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영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참조).

※ 위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서는 6세 미만의 유아에게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용 좌석안전띠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므로 6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도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중한 우리 아이, 자동차에 태울 때는 꼭 주의하세요~~

- 어린 자녀를 안고 타지 마세요.

  · 어린 자녀를 안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아이는 부모의 충격받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성인 몸무게의 7배에 해당하는 충격을 받게 되므로 아이에게는 매우 치명적이지요.

- 13세 이하 어린이는 반드시 자동차 뒷좌석에 타도록 하세요.

  · 에어백이 있는 앞좌석에 탈 경우, 충돌 시 에어백이 부풀리는 힘에 목이 꺽이거나 어린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막아 질식할 수 있어요.

- 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없어요.

  · 성인용 안전띠는 어린이의 몸에 헐겁기 때문에 충돌 시 튕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앉은키가 작기 때문에 어깨와 골반을 지나야 하는 안전띠가 목과 복부를 지나게 되어 사고 시 장파열 등의 손상을 유발해 보호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 안전띠가 꼬이거나 비틀어져 있으면 위험해요.

  · 급정거하거나 충돌할 때 안전띠 폭이 넓으면 충격을 분산 시켜줍니다. 그러나 안전띠가 꼬여있으면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고 심하면 내장 파열까지 초래할 수 있어요.

- 유아보호용 장구나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는 어린이의 체격과 기능, 안전성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 어린이의 체격을 고려해 알맞은 보호장구를 선택해야 해요. 특히 목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연령인 경우에는 목을 편안하게 감싸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목 보호대를 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유아보호용 장구나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는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세요.

· 보호장구에 앉히기만 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 해요.

- 아기가 보호장구에 타는 것을 싫어한다고 포기하면 안돼요.

· 아기가 싫어한다고 사고의 위험을 방치하면 안 되겠죠? 아이가 익숙해질 때까지 집에서도 앉혀놓고 놀게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거부감을 없애 주세요.

- 차량이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어린이를 앉힐 때 주의하세요.

· 차량이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었다면, 어린이를 태우기 전에 좌석이나 벨트가 뜨겁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며, 뜨거워진 부분은 어린이의 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보호장구 선택 시에도 단열처리가 되어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 여름철 불볕 더위에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남겨두지 마세요.

· 뜨거운 차 안에서 어린이가 체온의 균형을 잃는 속도는 성인보다 약 3배~5배 정도 빨라요. 또한 바깥 기온이 약 33°C일 때, 차내 온도는 단 20분만에 52°C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어린이는 단 몇 분이라도 차 안에 혼자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릴 때에는 차 안에 어린이가 자고 있지는 않은지 모두 내렸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교통안전 >

1.2.2.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어린이통학버스란 ?

▪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어린이집
- 학원 및 교습소
- 체육시설
-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
- 청소년수련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공공도서관
-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신고를 한 자동차

▪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4호).

▹ 자동차등록원부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의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나목(회사는 제외) 및 제1호의2에 따라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및 별표 5의32 제2호).

▹ 좌석 규격: 승객좌석 착석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머리지지대를 포함함)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일 것

▹ 좌석간 거리: 앞좌석등받이의 뒷면으로부터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까지의 거리는 승객좌석 착석용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 다만, 위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12호 2019. 3. 21. 개정, 2019. 4. 17. 시행) 부칙 제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색

▪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어린이통학버스의 표시등

▪ 다음과 같은 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제4항).

▹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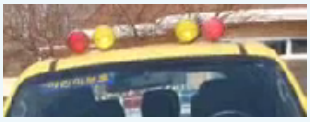
2. 1.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3.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4. 3.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않을 것

▹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어린이통학버스 표시등의 예시**



어린이통학버스의 간접시계장치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

▹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고, 각 단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의 작동 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할 것

※ **어린이통학버스 승강구(발판 및 보조발판)의 예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

1.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함)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비상점멸표시등 또는 표시등을 말함)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위 1.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함)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함)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위 1.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표지

▪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은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 어린이 보호표지 규격

1. 앞면부착용표지



2. 뒷면부착용표지



※ 어린이 보호표지색



-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일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

▪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6항).

어린이통학버스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 자동차에는 다음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해야 하는데, 어린이통학버스에는 1.과 3.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y 방향으로 각각 1,000밀리미터인 지점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300밀리미터부터 2,300밀리미터까지인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 상의 사각형 영역에 설치된 직경이 89밀리미터이고 높이가 500밀리미터인 관측봉을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가.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좌·우 최외측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250밀리미터부터 1,000밀리미터까지인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상의 사각형 영역에 있는 직경이 76밀리미터이고 높이가 1,000밀리미터인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의 단속음으로(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연속음 발생 가능), 차실내의 경고음의 크기는 최소 55데시벨(A) 이상이고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했을 때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일 것

다.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Hz 이상 4,000Hz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낼 것

라. 경고음 발생 횟수는 매분 40회 이상 100회 이하일 것

어린이통학버스의 최고속도제한장치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최고속도가 110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

▪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운전자의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 중일 경우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1.2.3.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표시의무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고,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 확인의무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위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함)를 작동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 위반 시 제재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위의 표시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 하차 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보도나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2).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및·제3호의4).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5).

  · 다만, 위 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도로교통법」(법률 제17311호, 2020. 5. 26.개정, 2020. 11. 27. 시행) 부칙 제2조].

- 위반 시 제재

  · 위의 확인의무를 다 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보호자 동승의무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를 어린이통학버스에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운영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보호자 동승 시 이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보호자 동승표지"라 함)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앞면은 반사지,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한 고무자석으로 제작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우측 옆면 승강구 부근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6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및 별표 15).



▹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5).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 의무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함)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7항).

▪ 이를 위반한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5).

신고증명서의 구비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운영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

자동차 보험 등의 가입의무

▪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후단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1항제8호).

※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발생한 사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질문)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교통사고의 발생 시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그러므로 아이가 다친 후 경찰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성년인 사람 중 유치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참조), 사고 시 보호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3.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본문 참조),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4.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아이가 다쳤다면 통학버스운영자 및 운전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유치원 등의 학교는 통학버스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사목 참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나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어린이 자전거 안전

1.3.1. 어린이 자전거 탑승 시 안전수칙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의 주의사항

보호장구의 착용

▪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다음과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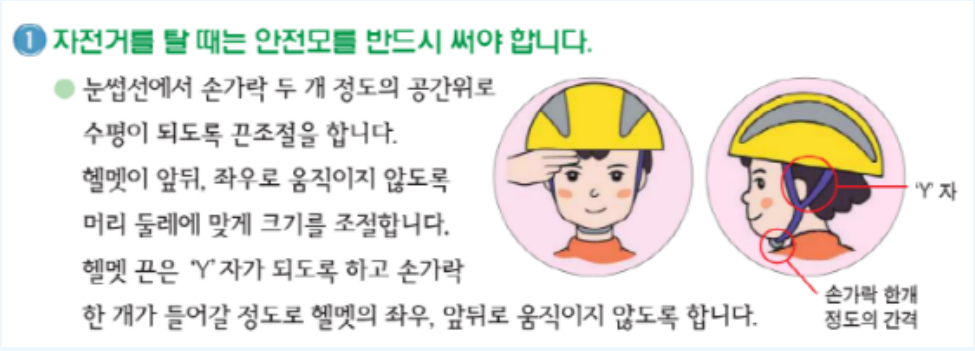
- 킥보드
- 롤러스케이트
- 인라인스케이트
- 스케이트보드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놀이기구

▪ 인명보호장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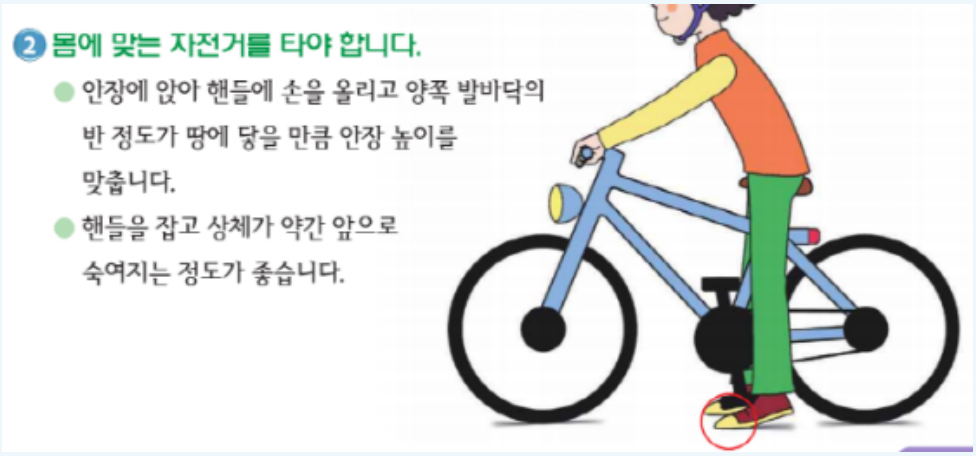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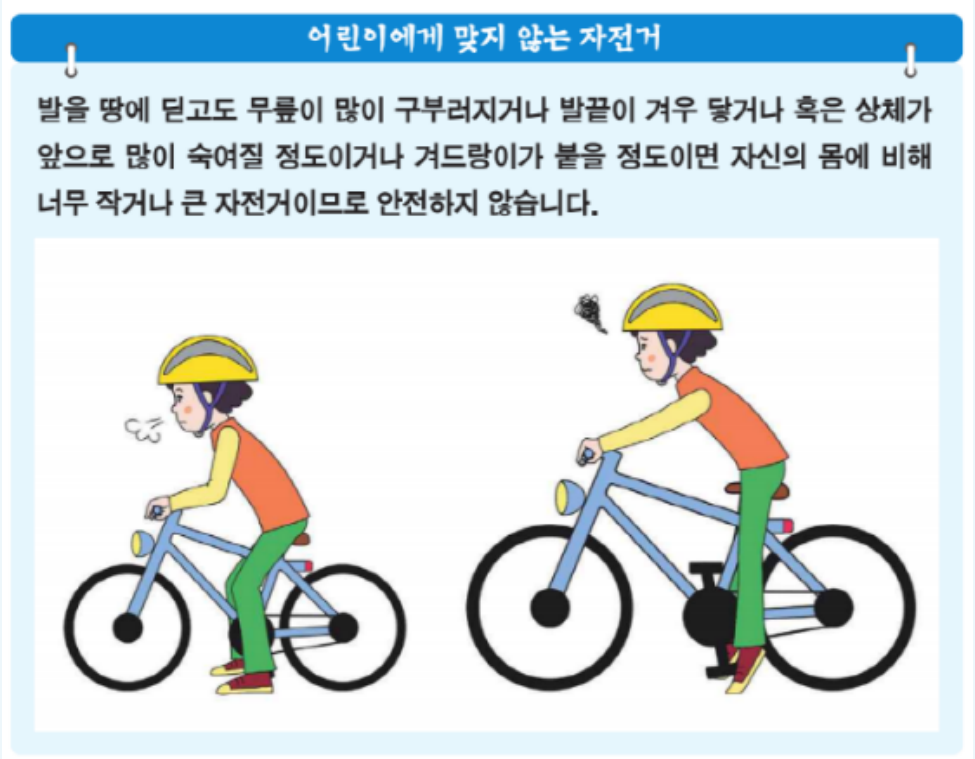
※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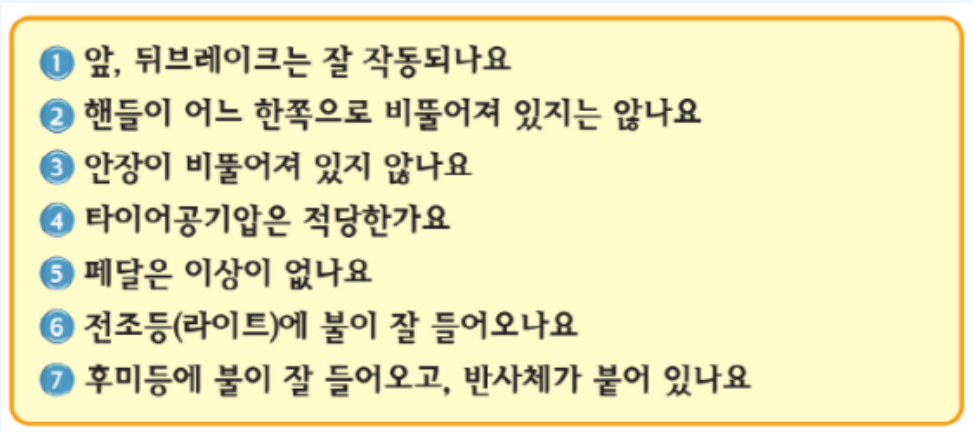
2) 몸에 맞는 자전거를 타야 해요~





3) 자전거 안전점검을 해요~(7POINT점검)





<출처: 행전안전부, 『초등학생을 위한 안전한 자전거 타기』 2. 자전거 타기전 준비사항 참조>

안전교육의 실시

자전거타기 안전교육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자전거의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의 통행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 그 밖의 도로의 통행방법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2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 보도의 통행방법

▹ 자전거의 운전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됐거나,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제1급부터 제7급까지)을 받은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자전거 탈 때 꼭 기억하세요~~

- 안전모와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
- 야간에 실외활동 시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의 옷을 입어요.
-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되어 위험하므로 내려서 걸어요.
- 주행 시에는 헤드폰, 이어폰 등을 사용지 않아요.
- 어린이의 체중, 신체 및 운동능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요.
- 자전거를 타기 전에 핸들, 안장, 체인,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발해요.
- 자전거 체인이나 바퀴, 페달에 걸릴 수 있는 긴 옷이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아요.
- 평상 시 속도를 줄일 때에는 뒷바퀴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해요.
- 급제동 시 뒷바퀴 브레이크를 먼저 작동한 뒤에 곧바로 앞바퀴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승용스포츠 안전 >

※ 자전거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자전거 운전자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정안전

2.1.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2.1.1. 가정안전사고의 종류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종류

낙상사고

▪ 어린이들은 가구 위로 기어 올라가 창문에서 떨어지거나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쉽게 미끄러지는 등 낙상사고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법을 알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죠?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추락사고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 의자, 침대 등 가구들을 창문 가까이에 두지 마세요. 가구를 딛고 올라가 창문에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문이 30cm만 열려 있어도 그 사이로 추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가정 내 모든 창문에 낙상 방지용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좋아요. 방충망은 어린이 낙상을 예방해 주지 못해요.
- 발코니, 난간, 계단 등에서 놀도록 두지 마세요. 잠깐 방심한 사이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 보행기를 태울 때는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서 태우세요. 보행기는 아이의 낙상사고를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생활안전 >

※ 미끄러짐이나 충돌사고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 세탁기 주변에 발판이 될 만한 것을 놓으면 아이가 빠질 수 있으므로 치우고 뚜껑을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를 해 두세요.
- 가능하면 전선을 길게 연결해 사용하지 않고 벽쪽으로 지나가게 해서 발에 걸리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 모서리가 둥글지 않은 가구에는 모서리보호덮개를 붙여 주세요.
- 아이들의 손이나 발이 끼기 쉬운 문틈에는 손끼임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 욕실이나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방지타일을 사용하거나 미끄럼방지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 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교육-영유아안전캠페인-가정안전 >

중독 및 삼킴사고

▪ 어린이들은 무엇이든지 입으로 먼저 넣기 때문에 아이가 삼킬 수 있는 물건들은 최대한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중독 및 삼킴사고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 가정용 화학제품(세제, 살충제, 접착제, 화장품 등)이나 의약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해요.
- 사용한 화학제품이나 의약품 등은 반드시 용기를 완전히 닫아 두세요.

- 독성이 있는 가정 내 물질들은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고 아이가 무심코 먹을 만한 용도의 용기(예시 : 음료수병)에는 절대로 옮겨두지 마세요.
- 약을 쉽게 먹이기 위해 “맛있는 거야”라며 먹이지 마세요.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약을 ‘맛있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거든요.
- 아이는 반드시 부모님이 주신 약만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어린이보호포장 용기에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 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교육-영유아안전캠페인-가정안전 >

화상 및 감전사고

▪ 아이들이 화상을 입으면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등 마음에 상처도 함께 입게 되니 항상 주의해야 해요.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화상사고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 뜨거운 음식이나 물을 아이에게 떨어뜨리지 않도록 아이를 안을 때는 뜨거운 것을 내려놓으세요.
- 아이가 뜨거운 음식을 자신에게 잡아당겨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는 항상 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세요.
- 가스렌지에서 음식을 요리하는 동안에는 요리 도구의 손잡이를 안쪽으로 향하도록 놓으세요. 이 때 손잡이가 다른 버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잡이가 돌거나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 아이가 글을 읽을 줄 알아서 전자렌지를 이용한 요리 방법과 시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전자렌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해요.
- 전자렌지를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이와 함께 사용설명서를 다시 읽어 보고 사용수칙을 꼭 지키도록 하면서 아이가 올바르게 사용하는지를 지켜보세요.

※ 감전사고 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 아이들은 전기 콘센트 구멍에 젓가락과 같은 뾰족한 것으로 찔러 감전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해요.
- 습기나 물기가 있는 곳은 감전의 위험이 높으니 세탁실, 주방, 목욕탕 등에서는 전기 제품을 만지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 전기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으세요.
- 전선을 잡고 당기면 플러그 연결선이 끊어질 우려가 있으니 코드를 뺄 때는 플러그 몸체를 잡고 빼도록 하세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생활안전 >

익사사고

▪ 아이를 혼자 욕조에 두거나 목욕물이 너무 많은 경우 익사할 위험성이 있으니 절대 아이를 혼자두지 마세요. 또한 목욕물은 아이 몸의 절반 이하로 받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생활안전).

2.1.2. 가정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방법

가정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방법

낙상사고 시 응급처치방법

▪ 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상처부위를 지혈하며 ☎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아이가 낙상사고로 다리 등을 다친 경우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 주세요~~



< 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교육-영유아안전캠페인-응급처치 >

중독 및 삼킴사고 시 응급처치방법

▪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물질이 목에 걸려 호흡이 곤란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이가 소리를 내지 않거나, 얼굴이 파래진다면 즉시 등을 두드려주며 도움을 요청하세요.

※ 아이 목에 이물질이 걸려 호흡이 곤란해지면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 주세요~~

영아(만 1세 이전의 아기)의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처치법

<의식이 있어요!>
1. 호흡곤란, 기침 소리가 나지 않거나 약하고, 얼굴이 파래지거나 놀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등두드리기와 흉부밀어내기법(BACK BLOW AND CHEST THRUST)을 시행한다.
2.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 즉시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등두드리기와 흉부밀어내기법 (BACK BLOW AND CHEST THRUST)
1. 팔에 영아의 얼굴이 지면을 향하도록 놓히고 손으로 영아의 턱과 가슴을 받친 자세를 취한 후, 영아의 견갑골 사이를 손꿈치를 이용해 5회 연속 세게 두드린다.
2. 5회 등두드리기 시행 후 등을 두드린 손으로 영아의 머리를 고정하여 영아의 얼굴이 위로 향하도록 돌려눕힌다.
3. 영아가 지지된 상태로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양측유두를 이은 가상의 선 바로 아래 흉골과 만나는 지점을 5회 연속 압박한다.
4. 물질이 배출될 때까지 등두드리기와 흉부밀어내기법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영아가 의식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의식이 없어요!>
1. 즉시 1190에 도움을 요청하고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얼굴을 위로 향하게 눕힌다.
2.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3. 인공호흡 시마다 환자의 입을 열어 이물질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이물질이 보이면 제거한다.
4. 이물질이 보이지 않으면 환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응급구조사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한다.

유아에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처치법

<의식은 있는데 말을 못하고, 기침이나 호흡이 불가능해요!>
1. 복부밀쳐 올리기(하임리히법)를 시행한다.
2. 유아가 의식을 잃게 되면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복부밀쳐올리기법(하임리히법)
1. 처치자는 유아의 등 뒤에 서서 허리를 감싼 후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엄지를 배꼽과 명치 끝의 중간 지점에 둔다.
2. 다른 한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고, 유아의 복부를 누르면서 빨리 위로 밀어 올린다(5회 반복한다)
3. 유아가 이물질을 뱉어낼 때까지 계속 시행한다.



※ 아이가 독극물을 마시면 이렇게 해 주세요.

독극물 중독의 응급처치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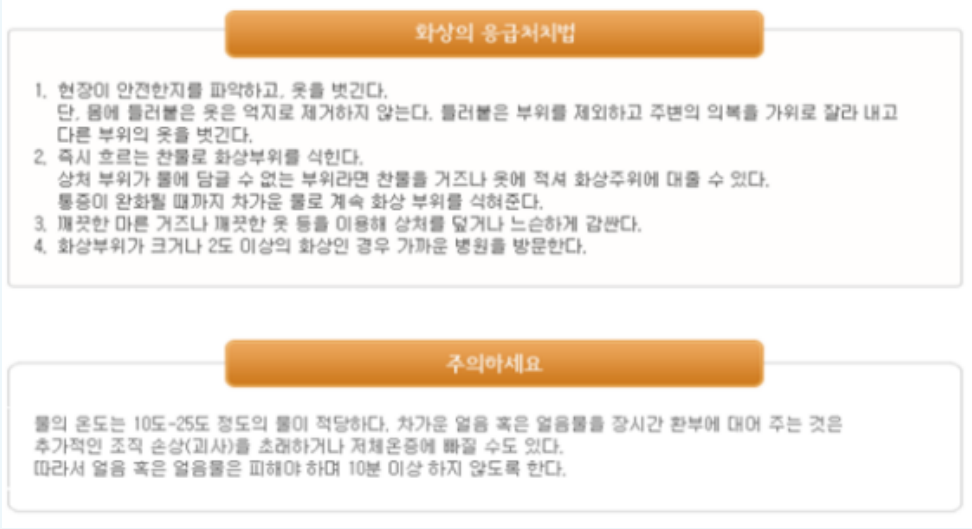
1. 주위가 안전한지 확인한다. 아이가 안전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 아이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긴다.
2. 주위에 약물 혹은 농약 등의 봉지나 병이 있다면 독물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한다 (독물 이름과 양, 복용시간).
3.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인공호흡 시 처치자는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4. 아이의 피부나 옷에 독물이 묻어 있다면 물로 씻어 내고 옷을 벗긴다.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눈을 씻어 준다.
5. 가능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한다. 남아 있는 약물이나 약물 봉지, 병이 있다면 병원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간다.

< 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교육-영유아안전캠페인-응급처치 >

화상 및 감전사고 시 응급처치방법

▪ 아이가 뜨거운 물이나 불에 데인 경우 즉시 흐르는 찬물에 화상부위를 식히고 ☎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아이가 화상을 당하면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 주세요~~



< 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교육-영유아안전캠페인-응급처치 >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아이가 전기에 감전되면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 주세요~~

- 아이가 감전되면 바로 아이를 만지지 말고 플러그, 전기를 빨리 차단 시켜야 해요.
- 전기 차단이 어려우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건(고무장갑, 잘 마른 막대, 플라스틱 등)을 이용해서 전기로부터 아이를 떼어 놓도록 해요.
- 아이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몇 초가 지나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세요.
- ☎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아이의 몸을 담요 등으로 덮어 따뜻하고 편안하게 눕혀 두세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생활안전 >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2.2.1. 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보호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어린이보호포장"이란 ?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으로,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제6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안전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화학물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 포함)

·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 다음의 제품은 해당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대상 품목입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Ⅰ).

어린이보호포장 필수 품목기준
1. 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2. 액체형 자동차용 부동액 3. 순간접착제(순간 접착력 있는 미용 접착제 포함) 4. 캡슐형 제품

▪ 제품 내 함유된 물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데, 중량이나 용기형태 또는 1회용인지 여부에 따라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4 Ⅱ 및 Ⅲ).

구 분	함유 물질
제품 내 다음의 물질을 함유하는 경우	에틸렌글리콜
	메탄올
	디클로로메탄
	1,2-이염화에탄
	살리실산메틸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메타크릴산
	개미산
	하이포(차아)염소산염
	과산화수소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모르폴린
	아세토니트릴
제품 내 함유된 다음 항목의 물질 총합이 10 % 이상의 액상제품이고, 40 °C에서 동점도 20.5 ㎟/s 이하인 경우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직쇄형 1차 알코올
	이소부틸 알코올
	테르펜 알코올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제품 내 최종 함유물이 pH 2.0 이하 또는 pH 11.5 이상의 액상제품인 경우(다만, OECD 시험방법을 기반으로 진행된 피부부식성시험 결과, 피부부식성 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외)	-

어린이보호포장의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입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5조제5항 참조).

-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단서 참조).

▪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자는 이후 다음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1.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4.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5.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6. 어린이보호포장 표시견본
7. 제품의 효과·효능(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

▪ 위의 신고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8항).

- 위 1. 및 2.의 사항
- 위 3.부터 5.까지의 사항(「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

어린이보호포장표시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의 사항 등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함)해야 하며,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제4항·제6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항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제1항).

- 제품의 명칭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가목 참조)

- 중량 또는 용량
- 사용 시 주의사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사항(「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사항(「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제조연월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그 밖에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5에 따른 표시사항

※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도안 모형

어린이보호포장

- 표시면의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사용자에게 유통될 경우에 한해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6 참조).

표시면 면적	표시사항
50 ㎠~100 ㎠	• 품목 • 제품명 • 제조자,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수입자, 연락처(수입 제품에 한함) • 그림문자 • 주요물질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의 표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승인번호 • 안전기준확인 마크
50 ㎠ 미만	• 품목 • 제품명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승인번호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위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9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의2).

-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6항).

1. 개선사항 및 개선이행일

2. 개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또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고,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구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참조).

위반 시 제재

제재	위반 내용	관련 법령
제조·수입 금지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 • 안전기준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안전기준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확인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표시기준을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품질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매 등의 금지 및 회수명령 등	•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제품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제품 •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
과징금 부과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안전기준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제조·수입 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위반사실 공표	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제품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 공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생활화학제품 외에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의 <가정안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 안전용기·포장 화장품 및 의약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안전용기·포장 화장품 및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의 개념 및 대상물

"안전용기·포장"이란 ?

▪ “안전용기·포장”이란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화장품법」 제2조제4호 및 「약사법」 제2조제13호).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 안전용기·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분야	안전용기·포장대상물품
화장품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2.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퍼센트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섭씨 40도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3.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
의약품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	1.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2.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3.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4.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5.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 6. 개별포장당 0.045밀리그램을 초과한 로페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7. 개별포장당 나프록센 성분이 250밀리그램을 초과한 나프록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8. 개별포장당 케토프로펜 성분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한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9. 개별포장당 66밀리그램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다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외

▪ 화장품의 경우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9조제1항).

▪ 의약품의 경우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는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오용으로 발생하는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약사법」 제64조제1항 본문).

▹ 다만,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사법」 제64조제1항 단서).

안전용기·포장 위반 시 제재

화장품

▪ 화장품에 대해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2항).

의약품

▪ 의약품에 대해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10호).

▪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5조제2항).

3. 학교안전

3.1. 학교안전사고

3.1.1.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및 예방노력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학교안전사고"란 ?

▪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교육활동”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해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활동과 관련된 활동
  -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 학교안전사고는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이 콘텐츠에서는 안전사고에 관해서만 기재합니다.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사고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 < 학교폭력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 교육시설 중 실험실·실습실 등에서의 안전에 관한 기준

▪ 학교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전단).

>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 - 국립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사립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 해당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 - 공립·사립 유치원, 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등: 시·도교육청
> - 공립 고등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시설에 다음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방자동차의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참조)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 비상구(非常口)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소방시설 강화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학교시설·설비·교구에 대한 안전점검

▪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항).

▪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항).

▪ 학교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 대체시설의 확보
-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 교육시설의 철거

▪ 학교장은 학교시설 외에도 교내 설비 및 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설비·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 학교장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어린이 여러분~~교실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에요~~

-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뛰지 말아야 해요. 뛰어 다니다가 친구들과 부딪히거나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앉아있는 다른 친구들이 그 공에 맞아 다칠 수 있잖아요.
- 청소 시간에 비치된 가구나 청소 도구로 장난치지 마세요. 청소 후에는 대걸레, 양동이 등 청소 도구를 제자리에 정리, 보관 해야겠죠?
- 교실 앞뒤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을 떼지 않도록 해요. 게시물은 보통 본드나 압정, 핀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 위험해요.
- 창틀에 올라가서 밖을 보거나, 윗몸을 많이 밖으로 내밀거나 또는 창틀에 기대어 앉는 행위를 하면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 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장난치거나 뾰족한 연필 등으로 장난을 치면 안돼요.
- 창문 밖으로 물체를 던지지 마세요. 작은 물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맞으면 중력에 의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 끈이나 줄로 목을 잡아당기는 장난은 몹시 위험하니 절대로 하지 마세요.
- 교실 출입문이나 건물 현관문에 매달리거나 장난치지 마세요. 특히 현관문은 다른 문에 비해 무거우며 유리문일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어요.
- 문을 여닫을 때에 뒷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복도 및 계단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 비나 눈이 오는 날에 복도나 계단이 미끄러우므로 조심해야 해요.
- 복도나 계단에서는 한쪽으로 천천히 걸어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복도에서 달리기나 씨름 등 장난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치기 쉬워요.
- 복도나 계단에 휴지를 버리거나 간식 부스러기를 흘리면 이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학급 단위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계단을 이동할 때 앞뒤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해요.
- 계단을 두 칸씩 뛰거나 한눈을 팔면 발을 잘못 디뎌 다치게 되니 주의하세요.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해요.

- 계단 난간을 넘거나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학교안전 >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 의무

▪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함)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점검·확인해야 하며,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보고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단서).

-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허가 등의 여부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3.2.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3.2.1.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의 종류 및 기준

학교안전사고에 대비한 보상공제의 가입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의 가입

▪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 유치원, 학교, 평생교육시설 및 한국학교 등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 다만,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단서).

피공제자 및 시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학교에 재학·재직 중인 학생·교직원은 해당 학교가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 포함)한 때

▹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

공제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종류

요양급여

▪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 등”이라 함)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학생 등 또는 학생 등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 등”이라 함)에게 지급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요양급여의 범위와 항목별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요양급여의 범위	지급기준
입원	일반병실의 입원료 지급.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1개의 입원실에 1명(「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3명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 입원한 경우(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 포함),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치아 보철비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人工齒牙)]에 드는 비용 지급.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지급
약제비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한방치료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인공팔다리·틀니, 안경·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조기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처방 및 구입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고,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 지급

▪ 요양급여로 보는 기타 비용(「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제5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중인 경우는 제외)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간병하는 경우에는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지급

구분	내용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신체 표면 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부상·질병의 상태가 위에 준하는 경우

※ 그 밖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학생 등이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①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과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5항 참조).

▪ 신체 장해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5).

구분		금액
피해자 본인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그 밖의 경우	2천만원× 노동력상실률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사람 포함), 미혼자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하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음)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 간병급여는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4).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상시간병급여 (常時看病給與)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2.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수시간병급여 (隨時看病給與)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5.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①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어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과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학생 등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항 참조).

▪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6).

구분	금액
피해자 본인	2천만원 (10세 이하인 경우 20% 감액)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사람 포함),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하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음)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 취업가능기간의 계산

▹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를 산정할 경우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본문).

√ 피공제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

√ 국민의 평균여명(平均餘命),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

▹ 다만, 피공제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단서).

▪ 유족급여 지급 시 손익상계

▹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는 생활비의 35%,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생활비의 30%를 빼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7).

▹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경우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단리법에 따른 이자 공제방식)에 따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장례비

▪ 장례비는 학생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경우

정부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통계도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위로금

▪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 하교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 다른 아이들을 피하려다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하교 도중 당한 사고에도 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도 교육활동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하교 중 발생한 사고도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상을 당한 경우에는 그 진찰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입원을 한 경우에는 입원·간호비 등이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요양을 한 후에도 장해가 발생한다면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 참조,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 참조).

3.2.2. 보상금의 지급제한

보상금의 지급제한

공제급여의 미지급

▪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본문).

▹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이하 “학생 등”이라 함)의 자해·자살(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 공제급여 전부 지급)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또는 학생 등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 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 등”이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학생 등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단서).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공제급여의 지급연기

▪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제급여의 감액

▪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학생 등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가 고려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제1항).

▪ 공제회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인 학생 등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 과실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 산정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인 학생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를 상계하지 않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

√ 유치원 학생

√ 초등학교 또는 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과실상계"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 및 그 금액의 산정 시 이를 어느 정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검색 서비스 참조).

※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한 체육부의 야외훈련에서 다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여부

(질문) 중학생인 아이가 체육부인데 팀워크를 다진다는 목적으로 코치의 인솔 하에 유원지를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한 훈련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데,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련활동을 말하므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 참조), 학교장의 승인이 없는 훈련은 교육활동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부활동을 하다 다쳤는데도,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냥 귀가했다가 추후 병원으로 간 경우나 원래 병이 있었는데 알지 못하다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알게 된 경우와 같이 부상 부위를 방치해 악화되었거나, 기존에 질병이 존재하고 있어 사고와 연관 짓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3항

참조).

※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상담(☎ 1688-4900)을 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환수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

▪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사람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피공제자인 학생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인 학생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사람의 고의·과실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환수

▪ 공제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와 해당 요양기관이 연대해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 환수통지

- 공제회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3.2.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절차

절차도



<출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학교안전공제제도-학교안전사고보장공제사업-업무처리 절차 참조>

사고발생의 통지

▪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통지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제2호).

공제급여의 청구

▪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제급여청구서와 청구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학교장 또는 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는 간병료나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대한 공제급여청구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입원확인서 등 의무기록과 간병 필요 여부 등에 관해 의료인이 발급한 소견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 학교장은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해야 하며,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학교장과 공제급여 지급을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4항).

▪ 청구기간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참조).

> ※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162조 참조).

조사

▪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해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해당 피공제자인 학생 등,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제2항제1호).

급여액의 결정

▪ 공제급여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 지급하기로 한 경우

▹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공제급여액을 결정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장과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에게 불복을 이유로 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급여액의 지급

▪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본문).

▪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단서).

심사청구

심사청구의 제기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 심사청구기간

▹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단서).

조사

▪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

▹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결정의 효력

▪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 심사청구인이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의 제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함)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 재심사청구기간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후단).

조사

▪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 및 제63조).

▹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해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 재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감정 또는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재결의 효력

▪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인이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경우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 학교안전공제회의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질문) 아이가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눈을 다쳤는데 요양급여의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왜 거절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네, ①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본문 및 제59조제1항 본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참조).

② 그러나, 만약 이 심사결정에도 수긍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제61조제2항 본문 및 제63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한 후 이 결정을 수긍하면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재결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 참조).

③ 이 재심사 결과에도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공제급여의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www.ss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놀이안전

4.1.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

4.1.1. 어린이 물놀이 안전

안전요원 배치 의무

안전요원 자격

▪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관리주체"라고 함)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제15조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

1.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레프팅가이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인명구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6.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대한적십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가능)
7.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안전요원 업무

▪ 안전요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물놀이 안전수칙

물놀이 전 주의사항

※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사항**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착용 후 들어가야 해요.
- 어린이 물놀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해야 해요.
- 해수욕장, 하천 등에서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물놀이를 하세요.

<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생활안전행동요령 >

물놀이 사고 대처방법

경련이 난 경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물놀이 도중 경련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 힘을 빼고 몸을 둥글게 오므려서 물 위에 뜨도록 해야 해요.
-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속에 얼굴을 넣은 채 쥐가 난 쪽의 엄지발가락을 힘껏 앞으로 꺾어서 잡아당겨요. 한동안 계속하면서 격통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세요.
- 한 번 쥐가 난 곳은 버릇이 되어 다시 쥐가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증이 가셨을 때 잘 마사지하면서 천천히 육지로 가야 해요.
- 육지에 오른 다음에도 발을 뻗고 장딴지 근육을 충분히 마사지해 주세요.
- 타월에 더운 물을 적셔서 장딴지에 감아주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물놀이안전 >

주변 사람이 물에 빠진 경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이렇게 해야 해요.**

- 즉시 큰 소리로 인명구조요원과 어른에게 알리고 ☎ 119에 신고하세요.
-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마세요. 인명 구조 자격이 있는 사람만 수영으로 구조할 수 있어요.
- 레스큐 튜브, 구명조끼 등을 던져주세요. 튜브가 없는 경우, 윗도리, 바지, 넥타이 등을 묶어 하나의 줄 형태로 연결한 후 주변에 음료수 PET병이나 물에 뜰 수 있는 슬리퍼를 끝에 묶어서 던져주면 잡고 나오기가 쉬어요.
-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뒤에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젖은 옷을 벗기고 옷이나 수건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감싼 후 마사지 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물놀이안전 >

물에 빠진 경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물놀이 도중 물에 빠지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물에 빠지면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몸에 힘을 빼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발이 바닥에 닿으면 팔을 아래로 내리고 발바닥으로 물을 누르듯 치면서 올라와 숨을 들이마셔요.
- 머리가 부분적으로 물 밖으로 나올 때, 팔을 벌리고 동시에 마치 가위질을 하듯 양다리를 젓도록 해요.
- 옷이 물에 젖으면 무거워서 가라앉기 쉬우므로 옷을 입고 물에 빠진 경우에는 침착하게 신발과 옷을 벗도록 노력해야 해요.
- 셔츠나 바지의 밑자락을 묶어 공기를 넣고 단단히 움켜잡으면 튜브 역할을 해 물에 뜰 수 있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물놀이안전 >

4.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4.2.1.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수칙

어린이놀이시설의 개념

"어린이놀이시설"이란 ?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

- 목욕장업을 하는 사람의 영업소
-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해 설치한 휴게시설
- 도시공원
-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 아동복지시설
-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 대규모점포
- 의료기관
- 주택단지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학원

-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종교시설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함)
-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 공공도서관
- 박물관
- 자연휴양림
- 하천구역 또는 하천시설

"어린이놀이기구"란 ?

▪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놀이안전, 어린이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어린이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인하기

놀이터의 바닥이 다칠만한 재질인지 확인하기

▪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지 재질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놀이터가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 기구 높이와 동일한 지름의 낙상지대가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바닥의 두께는 추락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15cm 이상이어야 하니 살펴보세요.
- 좋은 바닥은 톱밥이나 짚, 잔디나 흙,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순이에요.
- 기구나 울타리가 보호자의 시야를 막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 놀이기구에서 180cm 이상 떨어진 높이 120cm 이상의 담장이 쌓여 있는지 살펴보세요.
- 계단 손잡이나 보호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 모서리나 돌출부위, 이음새의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놀이안전 >

놀이기구의 표면 등에 아이들이 다칠만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 놀이기구의 표면은 갈라지거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나 끝이 있는 부품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끝처리된 모든 부분의 최소 반경은 3mm 이상이어야 하며, 실내놀이기구의 결합 부위는 안전폼(스펀지 등)으로 감싸져 있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부. Ⅰ.5.1. 놀이기구 표면 및 끝처리).

그네 주위의 위험물 확인하기

▪ 그네가 운동하고 있는 주위로 어린이의 접근을 막고, 그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시선이 타는 방향으로만 유지할 수 있도록 담이나 울타리를 최소 공간 밖에 설치했는지 확인하세요(「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부. Ⅱ. 5.).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그네를 타고 내릴 땐 이렇게 해야 해요.

-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리도록 해요.
- 줄을 양손으로 잡고 타며 그네가 움직이는 도중에 뛰어 내리지 않도록 해요.
- 한가운데에 앉아서 타세요.
-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타거나 서서 타지 않아요.
- 사슬을 꼬면 안돼요.
- 다른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앞뒤로 지나가지 않아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놀이안전 >

미끄럼틀의 타고 내리는 부분의 안전성 확인하기

▪ 미끄럼틀의 출발 지점에 접근하기 위한 사다리, 계단 등이 안전한지, 구조물들이 아이들의 옷에 걸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지, 표면은 매끄러운지, 도착지점의 앞으로 안전하게 도착해 아이가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세요(「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부. III. 4. 안전요건 참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미끄럼틀을 탈 때 장난치면 안돼요.

- 미끄럼판으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요.
- 앞사람이 올라간 다음 올라가요.
- 손잡이를 꼭 잡고 한 계단씩 올라가요.

-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아요.

-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오세요.

-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아요.

- 내려온 뒤에는 다음 사람이 내려오다 부딪치지 않도록 빨리 비켜주세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놀이안전 >

시소의 손잡이와 충격완화장치 확인하기

▪ 시소를 탈 때 잡을만한 손잡이가 있는지, 잡기는 편한지, 시소의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는 안전한지, 너무 딱딱해 위험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세요(「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1부. VI. 4. 안전요건 참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시소를 탈 때는 친구를 배려해야 해요.

- 함께 타는 친구와 마주보고 타세요.

- 반동으로 튕겨나갈 수 있으므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타세요.

- 시소를 탄 채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뛰지 않아요.

- 내릴 때는 같이 타는 친구에게 미리 말하고 조심하여 내리세요.

- 시소 밑에 발을 둔 채로 내리지 않아요.

- 같이 타고 있는 친구에게 충격을 주므로 시소 끝을 땅에 세게 내리지 않아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놀이안전 >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할 경우 주의사항

▪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할 경우 모래 묻은 손으로 얼굴이나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해요.

▪ 놀이터의 모래는 토양에 함유된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기생충 및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별표 2 제4호 및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4.2.2.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가장 먼저 ☎ 119로 연락하세요. 이 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정확한 응급처치는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 응급상황별 자세한 응급처치요령에 대해서는, <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국민행동요령-생활안전행동요령 > 을 참고하세요.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고하기

관리주체란 ?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관리주체의 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본문).

※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2항제1호).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본문).

※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호).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보험가입의무

▪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

▪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1억원이고, 부상의 경우에는 그 부상 정도 및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장해가 생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금액 이상이 보상한도액이 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별표 7).

>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 청구

▪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및 제21조제1항 참조).

> ※ 민사소송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나홀로 민사소송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어린이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4.3.1. 어린이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

어린이용품 구입 시 주의사항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의 시험·검사)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 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8호).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물론 각각의 제품별 안전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제1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란 어린이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하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7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해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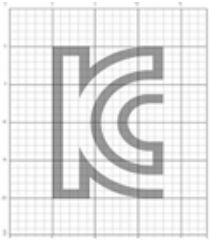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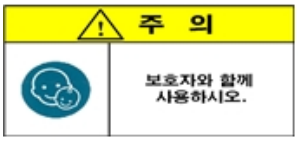
※ “어린이제품 모델”이란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6).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 안전인증의 표시

▹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인증표시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 이를 확인하고, 제품별 주의·경고 문구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항, 별표 7 및 별표 8 참조).

▹ 안전인증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제1항 단서 참조).

구 분	표시기준 및 방법
안전인증 표시	 
주의·경고표시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

▹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물론 각각의 제품별 안전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2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제24조).

▪ 안전확인의 표시

▹ 안전확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확인표시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

이를 확인하고, 제품별 주의·경고 문구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제1항 본문·제2항·제5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항, 별표 8 및 별표 11 참조).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의2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이 경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받음)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

√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 명령 또는 해당 제품의 위해사실 공표 및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최초로 안전확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부칙<제18819호, 2022. 2. 3.> 제2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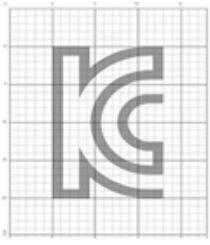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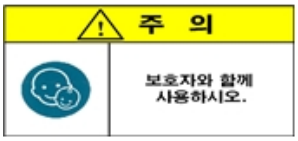
▹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의2제2항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명 및 모델명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 안전확인 신고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안전확인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8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 참조).

구 분	표시기준 및 방법
안전확인 표시	 
주의·경고표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제품별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제품별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제품별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안전기준만 적용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2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별표 3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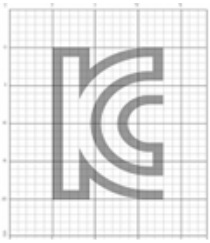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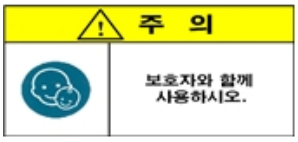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선글라스 포함)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함으로써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 또는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 본문·제2항·제7항·제8항).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 이를 확인하고, 제품별 주의·경고 문구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4항·제5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항, 별표 8 및 별표 12 참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 단서 참조).

구 분	표시기준 및 방법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주의·경고표시	 

※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의 허용치 기준을 확인하세요.

> ※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의 종류 및 종류별 허용치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참고하세요.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용품 선택하세요.

▪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용품에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용품을 선택해야 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참조).

리콜대상제품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1항), 구입하려는 제품이 이런 제품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 ※ **비비탄총 구입 시 주의사항**
>
> "비비탄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해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운동에너지로 비행시킬 수 있는 만 8세부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장난감 총을 말합니다(「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제2조제2항제4호 및 부속서 4).
>
> ※ **어린이용 비비탄총의 사용상 주의사항**(「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 8.3)
>
> 얼굴과 머리를 향해 쏘면 눈이나 귀에 맞을 우려가 높으므로 절대로 얼굴을 향해 쏘면 안 됩니다.
>
> 눈이나 귀 옆에서 쏘면 안 됩니다.
>
> 비비탄이 눈에 맞으면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
> 반드시 보안경을 쓰고 사용해야 합니다.
>
> 비비탄을 더 세게 나가게 하기 위해 구조를 바꾸거나 개조해서는 안 됩니다.
>
> 제조자가 공급하거나 추천한 비비탄 이외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3.2.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출처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넷, 안전배움터, 어린이교실, 응급처치법)

응급상황	응급처치

상처가 난 경우	-찰과상 ·조금 베었을 때나 약간 다친 경우는 우선 피를 닦고 비누와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필요하면 소독된 거즈로 덮으세요. -깊은상처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인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세요. 피가 많이 날 때에는 소독된 거즈 등으로 지혈을 하면서 병원에 가야하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물이나 먹을 것은 주지 마세요. -가시가 박혔을 때 ·족집게를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불에 달구어 식혀서 가시를 뽑고 족집게 등으로도 잘 안 빠지는 것은 병원에 가세요. 뽑은 후에는 우선 피를 닦고 비누와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필요하면 소독된 거즈로 덮으세요.
이물질을 삼킨 경우	-유독물질을 마신 경우 물이나 우유를 먹여서 함께 토하게 하세요. -빙초산이나 강한 세척제를 마신 경우에는 토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많은 양의 우유를 먹인 후 병원에 가세요. -캡슐형 세제(고농축 세제)를 마셨을 경우에는 토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병원 응급실로 가세요. 캡슐형 세제가 피부나 눈에 튀었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세요. -가솔린이나 기름 종류를 마셨을 때에는 토하면 위험하므로 토하지 말하지 말고 그대로 병원에 가야 해요. -단추형 건전지를 삼켰다고 의심되면 토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티끌 등 ·눈을 비비지 마세요. ·손을 깨끗이 닦은 후 어린이의 아래쪽 눈꺼풀을 아래로 당기면서 젖혀서 눈꺼풀 안쪽에 티끌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한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려 티끌이 함께 씻겨 나오도록 해야 해요. ·세면기에 깨끗한 물을 가득 담아 얼굴을 대고 눈을 깜박거려 씻어내도록 하세요. ·눈을 씻어도 티끌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눈꺼풀을 젖혀서 물에 적신 면봉이나 거즈로 닦아 내거나 빨아들이게 해야 해요. -화학물질 ·즉시 흐르는 물로 계속 씻어 주면서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도록 하세요. ·화학물질에 따라 치료가 다르므로 바로 응급진료를 받아야 해요.
귀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귀에 벌레가 들어간 경우 밝은 빛의 손전등을 귀에 비춰 벌레가 불빛을 보고 밖으로 나오도록 하세요. -죽은 벌레나 작은 물체가 귀에 들어간 경우에는 베이비오일을 한 두 방울을 귀에 떨어뜨린 후 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 오일에 묻어 밖으로 나온답니다. -귀에 물이나 먼지가 들어간 경우에는 깨끗한 면봉으로 닦아 주세요. -귀에 딱딱한 물건이 들어간 경우에는 무리하게 빼내려고 하지 말고(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바로 병원에 가세요.

머리를 다친 경우	-몸을 고정시켜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머리를 베개나 담요로 말아 괴어 주고 구토물이나 혀로 인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몸을 비스듬히 눕혀 주세요. -머리에서 피가 나면 거즈나 붕대 또는 깨끗한 천으로 상처부위를 눌러 주세요. -혹이 있으면 차가운 찜질을 하고 푹 쉬게 해야 해요. -토하거나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거나 귀나 코에서 피가 날 때에는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코피가 나는 경우	-머리를 앞으로 숙여 코피가 목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목 주위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코를 풀지 말아야 해요. -양쪽 콧등을 손가락으로 5분 동안 세게 눌러 주세요. -이마나 양쪽 눈 사이에 찬 물건이나 얼음주머니를 대주면 좋아요. -그래도 멎지 않으면 솜이나 바셀린 거즈로 코를 막아 주세요. -코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때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야 해요.
뼈가 부러진 경우	-다리골절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무릎과 발목을 받쳐 주세요. ·다친 다리에 패드를 대어 고정합니다. ·넓은 폭의 붕대로 마저 고정한 후 병원에 가세요. -쇄골골절 ·아이를 조심스럽게 앉히고 다친 쪽의 팔을 가슴부위에 걸쳐놓은 후 다치지 않은 손으로는 다친 쪽의 팔을 받치게 하세요. ·받치고 있는 아이의 팔을 팔 걸대로 받쳐줍니다. ·팔을 넓은 폭 붕대로 고정한 후 병원에 가세요.
감전사고	-감전된 어린이를 직접 만지지 마세요. -우선 플러그, 퓨즈 상자에서 전기를 차단시켜야 해요. -전기차단이 어려우면 나무나 플라스틱막대를 이용해 전기로부터 어린이를 떼어 놓으세요.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몇 초 후에도 숨을 쉬지 않으면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해야 해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어린이의 몸을 담요 등으로 덮어 따뜻하고 편안하게 눕혀 놓으세요.

※ 그 밖에 응급처치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한국소비자원 어린이 안전넷(www.isafe.go.kr), 안전배움터, 응급처치법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제조사의 민사상 제조물책임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

※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제1호).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판매·대여한 공급자가 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는 제외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3항).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아동용품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Ⅰ. 5. ②).

<table>
<tr><th colspan="3">피해유형</th><th>보상기준</th></tr>
<tr><td colspan="3">구입 후 10일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td><td>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td></tr>
<tr><td colspan="3">구입 후 1개월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td><td>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td></tr>
<tr><td rowspan="5">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td><td rowspan="4">품질보증기간 내</td><td>하자발생 시</td><td>무상수리</td></tr>
<tr><td>수리불가능 시</td><td>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td></tr>
<tr><td>교환불가능 시</td><td>구입가 환급</td></tr>
<tr><td>교환된 제품이 1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td><td>구입가 환급</td></tr>
<tr><td>품질보증기간 경과 후</td><td>수리불가능 시</td><td>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td></tr>
<tr><td rowspan="2">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td><td colspan="2">품질보증기간 내</td><td>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td></tr>
<tr><td colspan="2">품질보증기간 경과 후</td><td>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최고한도: 구입가격)</td></tr>
<tr><td rowspan="3">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td><td colspan="2">품질보증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td><td>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td></tr>
<tr><td colspan="2">품질보증기간 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td><td>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td></tr>
<tr><td colspan="2">품질보증기간 경과 후</td><td>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td></tr>
<tr><td colspan="3">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td><td>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td></tr>
<tr><td colspan="3">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td><td>제품교환</td></tr>
</table>

※ ´수리불가능 시´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문구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Ⅰ. 5. ⑭).

피해유형	보상기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 하자 발생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하자로 인한 피해발생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 법원을 통한 해결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하 참조).

※ 소비자분쟁해결방법 중 하나인 민사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비자분쟁해결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화재안전

5.1.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

5.1.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화재예방 안전조치

건물에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아동복지시설·유치원과 같이 어린이가 있는 시설과 의료시설, 공동주택, 학교·학원·도서관 등의 교육연구시설, 국가유산 등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자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이라면 이런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 ※ 각종 소방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조치

▪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2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 모닥불, 흡연 등 화기(火氣)의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 **※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요~~**
>
> - 성냥이나 라이터, 촛불, 화약, 폭죽 등으로 장난을 하면 안돼요.
> -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전제품을 연결하지 마세요.
> -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해요.
> - 전깃줄을 꼬거나 줄을 잡아당기면 위험해요.
> -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 등을 넣으면 감전이 될 뿐만 아니라 불이 날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돼요.
> - 전기기구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젖은 손으로는 만지지 마세요.
> - 껍질이 벗겨진 전선이나 전원은 바로 교체해 주세요.

- 난로, 다리미 등 전열기구 근처에서 장난치면 위험해요.

- 선풍기를 틀고 잘 경우에는 타이머를 맞추고 자야 해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화재 안전 >

화재발생 시 대처방법

대처방법

▪ 즉시 신고하기

▹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소방기본법」 제19조제1항).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불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화재 안전 >

▪ 대피하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대피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해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화재 시 피난 계획을 세워둡니다.



고층건물 출입시와 호텔, 여관 등에 숙박시에는 사전에 피난 계단, 피난기구 등을 확인하여 둡니다.



화재시 신속하고 침착한 행동으로 비상구 및 피난 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낮은 자세로 손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감싸고 숨을 짧게 쉽니다.



승강기는 갇히거나 질식할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상구를 통하여 대피할 경우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화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킵니다.



피난 시설 및 기구 없이 대피할 때는 커튼, 천 등으로 만든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리며, 당황하여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화재 안전 >

▪ 소화기 이용해 불끄기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소화기 사용방법을 알아두고 화재에 대비하세요~~



① 소화기를 똑바로 세워진 상태로 유지하고 손잡이를 잡고 불 쪽으로 접근합니다. 분말 소화기는 쓰기 전에 흔들어야 합니다.



② 안전핀을 뽑습니다.



③바람을 등지고 불이 난 곳으로 호스를 겨냥한 다음 손잡이를 힘껏 움켜쥡니다.



④ 약제가 나오면 호스를 천천히 움직여 비로 쓸 듯이 소화합니다.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화재 안전 >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 출처 :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 한국법인(Safe Kids Korea) >

※ 화상을 입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 상처에 차가운 물을 빨리 끼얹거나 차가운 물에 담가서 상처의 열을 식혀야 해요. 오래 찬물에 담그면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10분 이상 담그지 마세요.
- 흐르는 수돗물로 상처를 식힐 때 물줄기가 세면 상처에 흠집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물을 약하게 틀어 주세요.
- 열을 식힌 후에 화상에 바르는 크림이나 거즈를 붙여 상처를 보호해 주세요. 절대로 열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르지 마세요.
- 옷을 입은 상태로 심한 화상을 당한 경우 피부가 떨어져나갈 수 있으므로 옷을 억지로 벗거나 벗기려고 하지 마세요.
-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더러운 물건이나 먼지가 화상부위에 닿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상처에 소독 솜을 사용하면 붙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기름을 사용하면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화상을 입은 부위가 크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해요.
- 물집이 생기면 터진 부위로 세균이나 먼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세이프키즈코리아, 안전정보-안전자료-화재 안전 >

※ 그 밖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자연재난행동요령 > 및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재난예방대비-사회재난행동요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